

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3. 26.

-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
- 근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20조 및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및 제22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안○열	1982.7.12.	광주광역시 광산구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무 이행 (구직촉진수당 2회 이상 미제출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종로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

- 공고기간: 2024.3.26. ~ 2024.4.9.(15일간)
-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광산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0508-8230-0575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사항은 광주광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기관호(☎ 062-960-322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

